

□ 변경 대비표

신한 BNPP 봉류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C-i)
- 2 클래스(A-e,C-e,C-v) 신설
-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4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C-i):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 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1.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C-i):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제2부 11. 매입 및 환매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i: 가입제한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가입자격>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제2부 11. 매입 및 환매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i: 가입제한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가입자격>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1.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C-i):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 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2. 클래스(A-e,C-e,C-v)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신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 * 신탁업자보수 : 0.0600% 일반사무관리보수 : 0.0250%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보수는 변경 전 후 동일)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v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e 선취판매수수료 : 설정일 ~2013.12.31 : 납입금액의 0.6% 이내 2014.01.01 이후 :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10% 종류 C-e, 종류 C-v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e 집합투자업자보수 : 0.7800%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 ~ 2013.12.31 : 0.450% 2014.01.01 이후 : 0.375%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 0.7800%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 ~ 2013.12.31 : 0.600% 2014.01.01 이후 : 0.500% 종류 C-v 집합투자업자보수 : 0.7800% 판매회사보수 : 0.0200%
2. 클래스(A-e,C-e,C-v) 신설: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v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p>2. 클래스(A-e,C-e,C-v) 신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p> <p>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신설></p> <p>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p> <p>* 신탁업자보수 : 0.0600% 일반사무관리보수 : 0.0250%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보수는 변경 전 후 동일)</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v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e 선취판매수수료 : 설정일~2013.12.31 : 납입금액의 0.6% 이내 2014.01.01 이후 :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10% 종류 C-e, 종류 C-v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e 집합투자업자보수 : 0.7800%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 ~ 2013.12.31 : 0.450% 2014.01.01 이후 : 0.375%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 0.7800%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 ~ 2013.12.31 : 0.600% 2014.01.01 이후 : 0.500% 종류 C-v 집합투자업자보수 : 0.7800% 판매회사보수 : 0.0200%</p>
<p>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최근현황경신(기준일: 2013년 9월 30일)</p>
<p>4.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경신(기준일: 2013년 9월 30일)</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서신설></p>	<p>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삭제></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선행>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신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신설>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선행과 같음>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반대매수청구권</p>	<p>(4)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4)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p>	<p>라. 손해배상책임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고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p>	<p>라. 손해배상책임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고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2)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신설)으로 표시한 경우</p>	<p>(2)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신설)</p>	<p>(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p>
<p>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현행과 같음)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p>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C-i)
- 2 클래스(A-e, C-e, C-v) 신설
-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4 자구수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C-i):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 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 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 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 입한 개인 또는 법인</p>
<p>2. 클래스(A-e, C-e, C-v) 신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 선취판매 수수로 있음(제40조참조) 종류 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 선취판매 수수로 해당사항 없음 종류 C-v: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 선취판매 수수로 해당사항 없음</p>
<p>2. 클래스(A-e, C-e, C-v) 신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 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 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종류 A-e 수익증권 10. 종류 C-e 수익증권 14. 종류 C-v 수익증권</p>

<p>2. 클래스(A-e, C-e, C-v) 신설: 제 39조(보수)</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신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3. 종류 A-e 수익증권</p> <p>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80]</p> <p>B. 판매회사보수율: 해당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은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한다. 설정 후 ~ 2013.12.31.: 연 1,000분의 [4.50] 2014.01.01. 이후: 연 1,000분의 [3.75]</p> <p>C.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0]</p> <p>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10. 종류 C-e 수익증권</p> <p>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80]</p> <p>B. 판매회사보수율: 해당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은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한다. 설정 후 ~ 2013.12.31.: 연 1,000분의 [6.00] 2014.01.01. 이후: 연 1,000분의 [5.00]</p> <p>C.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0]</p> <p>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14. 종류 C-v 수익증권</p> <p>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80]</p> <p>B.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p> <p>C.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0]</p> <p>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5]</p>
<p>2. 클래스(A-e, C-e, C-v) 신설: 제 40조(판매수수료)</p>	<p>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p> <p>1.~4. <생략></p> <p><신설></p> <p>6.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없음</p>	<p>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p> <p>1.~4. <생략></p> <p>5. 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되며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설정일 ~ 2013.12.31.: 납입금액의 100분의 [0.60] 이내 2014.01.01. 이후: 납입금액의 100분의 [0.50] 이내</p> <p>6.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v 수익증권: 없음</p>
<p>2. 클래스(A-e, C-e, C-v) 신설: 제 41조(환매수수료)</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신설></p> <p>2. 종류 A-u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3.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종류 A-e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p> <p>3. 종류 A-u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4.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v 수익증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 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3항</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p> <p><단서 신설></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벽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 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5항</p>	<p>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 37조(수익자총회) 제5항</p>	<p>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 37조(수익자총회) 제7항</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p> <p>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p> <p>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p> <p>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p> <p>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른 것</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 37조(수익자총회) 제8항</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 37조(수익자총회) 제9항</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p>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제1항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1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신설) 4.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47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항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제 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제5항, 제 6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구수정 :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제2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설>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0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C-i)
- 2. 클래스(A-e,C-e,C-v) 신설
-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C-i):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i :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중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 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보법에 따 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 는 개인 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C-i :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중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 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보법에 따 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 입한 개인 또는 법인
2. 클래스(A-e,C-e,C-v) 신설: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신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 * 신탁업자보수 : 0.0600% 일반사무관리보수 : 0.0250%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보수는 변경 전 후 동일)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v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e 선취판매수수료 : 설정일~2013.12.31 : 납입금액의 0.6% 이내 2014.01.01 이후 :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액의 10% 종류 C-e, 종류 C-v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액의 70%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e 집합투자업자보수 : 0.7800%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 ~ 2013.12.31 : 0.450% 2014.01.01 이후 : 0.375%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 0.7800%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 ~ 2013.12.31 : 0.600% 2014.01.01 이후 : 0.500% 종류 C-v 집합투자업자보수 : 0.7800% 판매회사보수 : 0.0200%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1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3년 9월 30일)